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930
----------	------

2017년 7월 21일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17. 7. 12.
2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3. 회부일자 : 2017. 7. 14.
4. 상 정 : 서울특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
 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(2017. 7. 20.)
   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
## II. 제안설명 (기획조정실장 장혁재)

#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함.

## Ⅱ.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### 2. 주요내용

- 서울시 '16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412,900백만원을 감채기금에 적립함에 따라
-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상환을 위한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자 '17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〈표 2-1〉 감채기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수정계획 (A)	당초계획 (B)	증감액 (C)=(A)-(B)	증감사유
수 입 합 계		722,701	309,801	412,900	
전입금	순 세 계 잉 여 금	412,900	-	412,900	'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에서 법정경비를 공제한 잔액의 50% 이상 적립
	기 타 전입금 <sup>주1)</sup>	4,730	4,730	-	
이 차 수 입		14	14	-	
예 치 금 회 수		305,057	305,057	-	
지 출 합 계		722,701	309,801	412,900	
예수금 상환 <sup>주2)</sup>	원 금	205,300	205,300	-	
	이 차	4,730	4,730	-	
기 타 회 계 전 출 금		339,000	99,000	240,000	도시철도공채 상환 지원을 위한 전출금
일 반 운 영 비		50	50	-	
예 치 금		173,621	721	172,900	

※ 주1) 기타 전입금 :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전입금

주2) 예수금 상환 : 지하철 건설채무 상환을 위해 감채기금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수한 원리금을 상환

### 3. 검토의견

□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편성하지 아니하였으나 '16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(2조 587억 9,000만원)중 법정경비 등을 정산한 잉여금(8,257억 9,200만원)이 발생한 바,

○ 「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 제1항1)에 의하면 법정정산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50%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법정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중 4,129억원을 동 기금의 수입 및 지출항목에 각각 전입하고자 하는 것임

□ 아울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2)에 따라 “정책사업”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
1) 「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,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% 이상으로 한다.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

나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

다. 기타 법규로 정한 의무적 지출액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'15.7.24.개정, '16.1.1.시행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- 감채기금의 경우, **재무활동**과 **행정운영경비**로 구성되어 일반적인 기금의 정책사업과 차이가 있으나 지출계획중 **재무활동**의 지출액을 당초 계획액(3,097억 5,000만원) 대비 133.3%, 4,129억 원 증액된 7,226억 5,0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인 바, 대규모 재원의 기금 편입이라는 점에서 의회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요청할 사안으로 사료됨

〈표 3-1〉 감채기금 지출계획 변경내역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				당초계획 (A)	수정계획 (B)	증감액 (C)=(B)-(A)	증감률 (C)/(A)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		
총계					309,800	722,700	412,900	133.3
재무활동 (소계)					309,750	722,650	412,900	133.3
재무활동	내부거래 지출	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상환	예수금 원리금상환	예수금 상환	205,300	205,300	-	-
				예수금 이자상환	4,730	4,730	-	-
		기타회계전출금	기타회계등 전출금	기타회계전출금	99,000	339,000	240,000	242.4
	보전지출	여유자금 예치	예치금	은행예치금	721	173,621	172,900	23980.6
행정운영경비 (소계)					50	50	-	-
행정운영 경비	기본경비	기금관리비	일반운영비	사무관리비	50	50	-	-

**IV. 심사결과 : 원안의결**

**V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**

**VI. 계수조정소위원회 : 구성하지 않음**

◇첨부 : 2017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부. 끝.

#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193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7월 12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서울시 '16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412,900백만원을 감채기금에 적립함에 따라

나.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상환을 위한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자 '17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<수입 및 지출 내역>

(단위 : 백만원)

수입				지출					
구분	수정계획 (A)	당초계획 (B)	증감 (A-B)	구분	수정계획 (A)	당초계획 (B)	증감 (A-B)		
합계	722,701	309,801	412,900	합계	722,701	309,801	412,900		
전입금	순세계잉여금 <sup>1)</sup>	412,900	-	412,900	예수금상환 <sup>3)</sup>	원금	205,300	205,300	-
	기타전입금 <sup>2)</sup>	4,730	4,730	-		이자	4,730	4,730	-
이자수입	14	14	-	기타지출 <sup>4)</sup>	339,000	99,000	240,000		
예치금 회수	305,057	305,057	-	일반운영비	50	50	-		
				예치금	173,621	721	172,900		

1) 전입금 중 순세계잉여금 :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정산금 등을 제외한 잔액의 50%를 감채기금에 적립

2) 전입금 중 기타 전입금 :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전입금

3) 예수금 상환 : 지하철 건설채무 상환을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원리금을 상환

4) 기타지출 : 도시철도공채 상환 지원을 위한 전출금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예산담당관 협의 완료

※ 작성자 : 재정관리담당관 재정총괄팀 이윤정 (☎ 2133-6864)